

수입 19 . . . . .

사 진행번호

날짜	시각	진행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
		3/19 소장 (판결) 3/18 (소장명제) (11)	86 가압 12 목	해고 무효 확인	합 2
3/6	10:00				
3/15		사건명제			
3/27	10:00		법원	재판장 주심 서기	법정 1
4/17	10:00			정승환 이재범	
			담당		
			원고	이형노 (외인)	
			(선임범위)	대리인	
			피고	제일교통자동차(주) (외인)	
			(선임범위)	대리인 김익하	
			참가	대리인	
			연락처	성명 전화 관계 비고	
					2.19Z(0557)
			주소		
			비고		

부산시서구부민동2가10~19 변호사노무현법률사무소 전화 5511번 3137번

32043



# 진행 기록

일	구분	변론, 지시 및 보고사항	비고
2/19	보)	소장 제출 (우편 송달)	
2/18	보)	" 인위적 보정 ( " )	
3/6	변)	① 소장 귀속 ○	
		② 증인 조준석 신청 → 반려 (서명사 2442 ...)	
		③ 서증조사(?) (경사사건) 채. 3/15 (3)	
	자.	서명사 신청	
3/11	보)	서증조사 제출 (송달) 완료	
3/27	변)	① 증인 박성영 신청	
4/25	보)	소위조사 제출 (송달) 완료	

소 취 하 서

86가합 12호

해고 무효 확인

원 고 이 형 노

피 고 세일고통자동차(주)

위 사건의 원고는 사정에 의하여 이견 소를 취하합니다.

1986. 4.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 무 현

마산지방법원

귀중

부산시서구부민동2가10번지의19 변호사 문재인 최상은 법률사무소 전화 26-3137 번  
25-5511 번  
27-0456 번

소 장

원고 이 형 노

피고 세일교통자동차주식회사

부산시서구부민동 2가 10번지의 19 변호사 노무현 법률사무소 전화 26-3137번  
25-5511번

소 장

원 고 이 형 노

경남 창원시 무전동 218번지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노 무 현, 최상은

피 고 세일교통자동차주식회사

경남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17번지의 1

대표이사 강 세 환

해고무효확인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85. 11. 11.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5일 금 355,675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 11. 11. 부터 본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부산시서구부민동 2가 10번지의 19 변호사 노무현 법률사무소 전화 26-3137번  
25-5511번

본소장 부분 송달의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위 제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82. 3. 15.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근무  
하였다.
2. 그 기간중 1985. 11. 11. 피고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를  
해고 하였으므로
3. 이에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와 원고가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  
던 월급 금 355,675원을 매월 15일 월급일에 지급함과, 또한  
해고에 따르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민사법정 지연 손해금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지연손해금  
을 아울러 지급받고자 본건 청구에 이르러 것이다.

법 정 방 법

갑제 1호 중 징계 위원회 결과통보

기타 추후 제출하겠음.

첨 부 서 류

- 1. 위호증
- 1. 법인등기부등본
- 1. 소장부분
- 1. 위임장
- 1. 납부서

1985. 12.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노 무 현  
          취 상 우

마산지방법원

귀중



귀하가

마 산 지 방 법 원

보 정 명 령

재판 의 고지	방법 본 송달	장소	년월일	주자인

86가항 12 해산부결 확인

사건

원고 이 정 노

피고 세일소통지점 (주) 대우이차 강서현

귀하가 제출한 증거 중 다음의 흠결이 있으나  
 원고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 일  
 안에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 사항

인기액 금 25,320 원링

198 6. 2. 8 .

재판장 판사 김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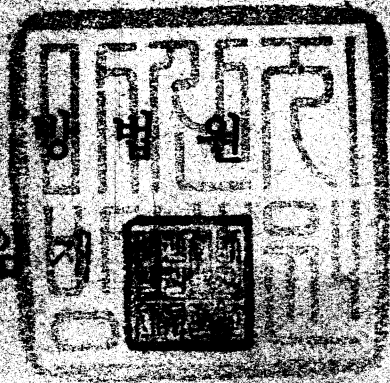
# 정 본 이 다

198 년 1986. 2. 8 일 일

마 산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 임

법원주사



본 정본에는 법원의 인을 찍는다

보 정 서

85가합 12호

해고 무효 확인

원 고 이 형 노

피 고 세일코통자동차(주)

위 사건의 원고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1. 보정할 내용

소장인지대 금 25,320원정

1986. 2.

위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노 무 현

마산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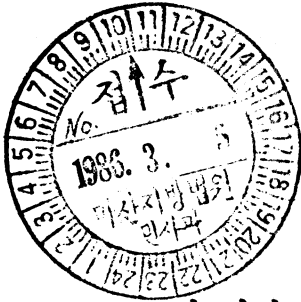
귀중

86가합12

답 변 서

원 고 이 형 노

피 고 세일교통 자동 차주식회사



2. 1695

위 당사자간 해고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 이형노가 1982. 3. 15.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과 1985. 11. 11. 해고처분을 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전부 부인합니다.

1986. 3. 5.

마산시 장군동 4가 26

변호사 金益河 법률사무소

전화 사무실 ② 6422 번  
자택 ② 2176 번





위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의 하



마산지방법원

귀 중

마산시 장군동 4가 26

변호사 金益河 법률사무소

전화 사무실 ② 6422 번  
자택 ② 2176 번



서 증 조 사 신 청

86가합 12호

해고 무효 확인

원 고 이 형 노

피 고 세일고통자동차(주)

위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서증 조사할 장소

경상남도 충무경찰서

2. 조사할 서증

가. 제 379호 횡령 피고소인 이형노 사건기록 일체.

나. 제 3147호 명예훼손등 피고소인 오화자 사건 기록 일체.

1986. 3.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 무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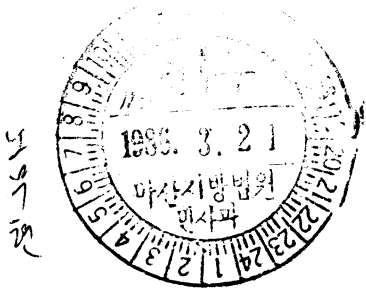


마산지방법원

귀중

부산시서구부민동2가10번지의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최상은 26-3137 번  
전화 25-5511 번  
27-0456 번

86가합12



준 비 서 면

원고 이 형 노

피고 세일교통 자동차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해고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회사는 원래 1982. 2. 소의 동남교통주식회사 고현영업소로서 거제군 고현리를 중심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였는데, 1985. 9. 1. 위 고현영업소를 인수하여 현세일교통 자동차주식회사로 법인 설립을 하여 역시 고현을 중심으로 10개노선에 걸쳐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 피고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36대인데, 그중 예비차량은 3대이고, 상용 가동 차량은 33대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는 50여명이고, 안내양 상시인원은 통상 약 50여명이며, 피고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 버스의 요금은 모두 금 120원으로 균일한것이 아니고, 특히

마산시 장군동 4가 26 변호사 金益河 법률사무소 전화 사무실 ② 6422 번  
 자택 ② 2176 번

고현에서 농포간의 요금은 각 구간별로 요금을 징수 하고 있으므로 그  
요금은 120원부터 31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3. 원고 이형노는 1982. 3. 15.에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고  
현에서 농포간을 운행하는 경남 5자 6032호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운행  
중 1985. 6. 11. 11:20경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국산고개길에서 안  
전거리 미확보로 앞서가던 테미콘트럭을 충격하여 위 테미콘트럭에 대  
하여는 금37,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원고 운행차량인 경남 5자  
6032호 버스는 수리비 금510,000원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어 1차  
안전운행을 하라는 주의를 받은바 있고, 1985. 9. 20. 위 차량을 운행  
하여 농포에서 고현까지 갔다 오면서 그당시 위 차량의 안내원인 소의  
오확자에게 수익금 일부를 작성할때 수익금 요금 일부를 떼어 놓으라고  
지시하여 위 오확자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금31,000원을 떼어 그중  
금 18,000원을 원고가 가지고 나머지 금 13,000원은 위 오확자가 가진 사실  
이 있고,

1985. 9. 26. 역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농포에서 고현까지 갔다오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중 금22,000원을 떼어 그중 금 13,000원을 원고

마산시 장군동 4가 26 변호사 金益河 법률사무소

전화 사무실 ② 6422 번  
자택 ② 2176 번





가 가지고, 나머지 금 9,000원을 소위 오화자가 가지므로서 금 53,000원을 소위 빙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에게 접촉사고와 빙당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부정행위를 계속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의 빙당행위는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64조 4항의 공금횡령행위에 해당됨과 동시에 단체협약 제29조의 정화운동에 위배됨이 명백하므로 1985. 11. 8. 원고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더니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겠다고 하므로 피고회사는 1985. 11. 8. 12:00 본사사무실에서 징계위원장, 징계위원, 간사,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일 동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29조와 취업규칙 제64조 4항에 해당하므로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해고할것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1985. 11. 11.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다.

5. 사실은 이상과 같이 원고의 행위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해  
고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1986. 3. .

위 피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의



마산지방법원

귀 중

마산시 장군동 4가 26 변호사 金益河 법률사무소

전화 사무실 ② 6422 번  
자택 ② 2176 번

